2019년도 제24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자 : 2019. 11. 6.(수요일)

o 방　　법 : 온라인심의

o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 심의위원 :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Ⅱ. 회의안건 및 결과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회의안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7건(안건번호 제2019-143348호 ~ 제2019-143407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 사이트의 ‘(영화)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2019)’ 등 67건의 게시물(안건번호 제2019-143348호~143407호)은 모두 불법 복제된 영상(영화)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며,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여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짐

- B 위원 : 67건의 게시물(안건번호 제2019-143348호~143407호)은 모두 불법 복제된 영상(영화)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당해 게시물들은 저작권 권리자가 아닌 이에 의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으며, 산업적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저작권법 제133조의 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됨.
  다만 ,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여야 할 것임.

- D 위원 : 본 심의안건 대상 제2019-143348호 ~ 143407호는 ○○○○ 등 5개의 웹하드(게시판형) 파에 게시된 자료들임. 이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이용자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웹하드에 복제 전송을 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바, 이는 합법적인 이용행위를 벗어나는 불법

이용행위에 해당함. 이들 이용자들이 직접 불법으로 복제 전송한 저작물의 대다수는 최신 인기 TV 드라마와 영화들을 포함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이에 위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복제 전송행위의 중단과 아울러 게시자에 대한 경고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중 이미 삭제되거나 임시조치된 복제물(제2019-143351호, 143357호, 143362호, 143364호, 143365호, 143368호～143371호, 143373호, 143374호, 143378호～143384호, 143386호, 143390호～143392호, 143394호, 143395호, 143398호～143400호, 143402호～143407호)은 경고의 시정권고를 요청함.

2019년 제24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6.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